

1. 개정이유

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조정 기준 완화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서식 명칭을 ‘병역증서 발급(재발급) 신청서’로 일치(안 제8조 및 제9조)

‘병역증서 발급(재발급) 신청서’ 내용 중 ‘용도’와 ‘신청 내용’ 항목의 명확화(안 별지 제3호서식)

나. 사회복무요원 연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복학사유 외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가일수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안 제39조의2)

다. 기타 서식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병적증명서 발급”을 “병역증서 발급(재발급)”으로 한다.

제9조제4항 전단 중 “병역증(전역증) 재발급”을 “병역증서 발급(재발급)”으로 한다.

제39조의2제2항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“계급”을 “전역일”로 하고, 같은 앞쪽 중 “병과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하며, 같은 앞쪽 중 “전역(임관)일”을 “군별/계급”으로 하고, 같은 앞쪽 중 “전역사유”를 “임관·입영일”로 하며, 같은 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증은 전시·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.

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병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

병역증서 발급(재발급) 신청서

※ 병역증 또는 전역증 재발급 신청자는 공통항목만 기재하시기 바라며, 병적증명서 신청자는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관		처리기간		즉시			
신청서 종류 [] 병적증명서([] 한글, [] 영문) [] 병역증 재발급 [] 전역증 재발급											
기 통	발급 대상자 인적사항	성명(한글)		성명(영문) * 영문병적증명서 또는 영문 전역증 신청자만 기재		생년월일					
		주소				휴대전화					
		군별		군번	계급	전역(소집해제)일자					
병적증명서 신청 내용		용도	[] 공직자 등 신고 [] 입영(소집) 사실 확인 [] 경력 확인 [] 취업 [] 시험 응시 [] 보호대상자 등록(안장심사용 포함) [] 기타 ()								
		[] 군(대체)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	■ 처분사유 또는 질병명 [] 기재 [] 미기재 * 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처분사유 및 질병명·심신장애 내용인 경우 선택								
		[] 군(대체)복무를 마친 사람	① 군 별 [] 기재 [] 미기재 ② 군 번 [] 기재 [] 미기재 ③ 계 급 [] 기재 [] 미기재 ④ 복무분야 [] 기재 [] 미기재 * 해당항목은 전투경찰대원, 의무경찰대원, 의무소방원, 해양경찰대원,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환복무한 경우에 한함 ⑤ 복무계급 [] 기재 [] 미기재 * 해당항목은 전투경찰대원, 의무경찰대원, 의무소방원, 해양경찰대원,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환복무한 경우에 한함 ⑥ 병과(특기) [] 기재 [] 미기재 ⑦ 전역구분(사유) [] 기재 [] 미기재 ⑧ 역 종 [] 기재 [] 미기재 * ‘공직자 등 신고용’, ‘보호대상자 등록용’은 별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* 입영(입관, 소집)일자 및 전역(소집해제)일자는 기본항목으로 기재하여 발급								
			그 밖의 발급 요구사항							* 상단의 신청 내용 이외에 군경력 등 요구사항 기재	발급매수 [] 매

위와 같이 병역증서의 ([]발급, []재발급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발급대상자와의 관계:

○○지방병무청(병무지청)장 귀하

신청인 지참물	신분증
신청인 제출서류	1. 증명사진(2.5cm×3cm) 1매(일반 전역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, 군 경력이 포함된 전역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) 2. 위임장 1부[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가족(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)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]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. 여권정보(영문표기 병적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3.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1부[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족(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)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]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,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안내사항

- 현역,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(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합니다)이나 전시근로역, 병역이 면제된 사람 또는 대체역 소집면제·해제된 사람의 병적증명서는 「병역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.
- 병역증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(앞쪽)

전 역 증		
No.		
성명	생년월일	군별/계급
군번	입관·입영일	전역일
사진 2.5cm×3cm	「병역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역자임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장 (직인)	

87mm×56mm[전산용지 150g/㎡]

.....

(뒤쪽)

전역사유	병과	혈액형
전역당시 부대	역종	
전역근거	인명 제 호(. .)	

○ 이 증은 전사·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.

○ 이 증을 주우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

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 통보서

일련 번호	업체명	법인 등록번호	인터넷 주소	전화	선박 수	승선 가능 선박 수	다음 해 필요인원		비고
	소재지	사업자 등록번호	담당자 E-mail	FAX	총 톤수	국가필수 선박 수	국가필수 선박	그 밖의 선박	

※ 작성요령

- 업종별 업체 명칭은 가나다 순으로 작성합니다.
- 승선 가능 선박은 승선근무예비역이 긴급구호 등 필요 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등 통신시설을 갖춘 선박으로 해운업 분야 업체의 경우 500톤 이상의 선박, 수산업 분야 업체의 경우 100톤 이상의 선박을 의미합니다.

297mm×210mm[백상지 80g/㎡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병적증명서의 발급 등) ① 병적을 증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<u>병적증명서</u>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8조(병적증명서의 발급 등) ① ----- ----- <u>병역증서</u> 발급 (재발급) -----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9조(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) ① ~ ③ (생략)	제9조(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<u>병역증(전역증) 재발급</u> 신청서에 사진 1매(제2항제2호의 전역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 <u>병역증서</u> 발급(재발급) 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이 경우 신청인이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·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	-----

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~ ⑦ (생략)

제39조의2(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) ① (생략)

②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별 총연가일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-----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39조의2(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경우 등 불가
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에
대해서는 -----

-----.